자료 97-02

정 책 토 론 회

金融實名制의 定着과 發展方向

1997. 3.

鄭 暎 憲
全 暎 俊

本 論文에 실린 內容은 筆者의 個人意見을 反映한 것이며 韓國租稅硏究院의 公式的인 見解와는 無關함.

정책토론회 개요

○ 주 제 :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 일 시 : 1997. 3. 28(금) 10:00 ~ 12:40

○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 10:00 ~ 10:10 개회인사
- 10:10 ~ 10:30 주제발표 :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 10:30 ~ 12:30 토 론
- 12:30 ~ 12:40 객석토론 및 종합정리

○ 사회자 : 崔 洸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 발표자 : 鄭暎憲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 姜應善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郭泰元 서강대 교수
金泰日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사
閔丙均 장은경제연구소 소장
成琦秀 동명정보대학교 총장
李根植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
張鉉俊 중앙일보 논설위원
崔景國 대신증권 사장
崔明根 서울시립대 교수
崔倍鎭 (주)선일옵트론 대표이사

(가나다 順)

<목 차>

Ⅰ. 금융실명제의 목적과 주요내용 1
1. 금융실명제의 목적 및 취지 1
2. 금융실명제 추진의 역사 2
3.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주요 내용 3
4.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 9

Ⅱ. 금융실명제 보완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11
1. 금융실명제 실시와 경제위기 12
2. 금융실명제 실시와 과소비·저축감소 14
3. 금융실명제 실시에 의한 세무관련 불안감 18
4. 금융실명제와 국민 불편 및 비현실적 행정요소 19
5. 지하자금의 양성화 및 산업자금화 21
6. 한시적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항구적 법제화 21
7. 종합의견 22

Ⅲ.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24
1.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의 기본방향 24
2.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24
3. 금융저축 등 금융거래에 따른 세무관련 불안감 해소 26
4.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31
5. 지하자금을 중소기업 관련 자금으로의 양성화 유도 33
6.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체입법화 추진 36
7. 금융실명제 관련 제도의 정비 37
8. 1997년 2월에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추진 보류 38
9. 금융실명제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한 인식 제고 38

<부 록> 41
<부록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43
<부록 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조치 52
<부록 3>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55
<부록 4>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금융시장 동향 59

<표·그림 목 차>

<표 Ⅰ-1>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 6
<표 Ⅰ-2> 과징금 징수비율 7
<표 Ⅰ-3>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 10
<표 Ⅱ-1>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자금이동 내역 16
<표 Ⅱ-2>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가 되는 금융저축의 현황 17
<표 Ⅲ-1> 증여가액별 실효세율 35
<부표 1> 경제성장률 추이 55
<부표 2> 물가 동향 55
<부표 3> 수출입 동향 56
<부표 4> 실업률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56
<부표 5> 경제주체별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57
<부표 6> 지가지수 추이 58
<부표 7>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추이 58
<부표 8> 현금통화 추이 59
<부표 9> 각종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60
<부표 10> 금리 추이 60
<부표 11> 금융권별 수신 추이 61
<부표 12> 금융저축 동향 62
<부표 13> 주식시장 동향 62
<부표 14> 채권거래대금 63
<부표 15> 분기별 보험료수입 추이 63
<부표 16> 조세혜택 유형별 종합과세 제외 대상 금융상품 64
<부표 17> 금융소득 종합과세 발효 전후의 자금유출 금융상품 동향 64
<부표 18> 금융소득 종합과세 발효 전후의 자금유입 금융상품 동향 65
<부표 19> 환율 추이 65
<부표 20> 자금의 대외지급 추이 65
[그림 Ⅱ-1] 저축률 추이(1970~1995) 15

Ⅰ. 금융실명제의 목적과 주요내용

1. 금융실명제의 목적 및 취지

- 금융실명제는 경제주체의 많은 경제행위 중 금융거래, 그것도 공적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자의 실지명의의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임. 따라서 개인상호간, 기업상호간, 개인과 기업간의 금융거래와 실물거래는 금융실명제의 대상이 아님.

- 금융실명제의 목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음.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경제정의의 실현이 나타나게 되는 경로는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경제적 신분의 세습억제, 불로소득 및 투기의 원천적 봉쇄, 부정부패의 감소, 그리고 금권정치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금융실명제는 무기명이나 가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로 거래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에 거래자를 밝혀 음성적인 금융거래와 비공식적인 자금관리로 오랜 세월에 걸쳐 흐트러진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함. 이렇게 하여 사회형평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금융실명제의 주된 의의가 있음.

- 금융실명제는 자본주의 경제운영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경기규칙(rule of game)임. 금융실명제가 포함되지 않은 경기규칙으로 운영된 우리 사회전반의 경기운영 결과가 사회적 비리 또는 대형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금융실명제가 포함된 새로운 경기규칙을 도입하여 사회전반을 운영해 보자는 것이 원래의 도입 취지임.

-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경제정의 실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관행에 의해서든 법률 등에 의해서든 금융실명제가 실시·정착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경제정의가 더 잘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정의의 실현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정의 실현의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즉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정의의 실현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경제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경제정의가 실현됨을 인식해야 함.

-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근본목적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도 수용되어서는 아니됨. 금융실명제의 원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공정거래법, 정치자금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 관련제도를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화시키고 제정·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2. 금융실명제 추진의 역사

- 정부는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함)에 의하여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음.

  ○1982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도 격렬한 찬·반 대립 속에 금융실명제는 10여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실시되지 못하고 논란만 진행되

어 왔음.

○ 금융실명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왜곡되어 왔던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본질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의 실시가 초래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몇 차례 실시가 유보되었음.

- 많은 시행 착오와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금융실명제 추진과정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1961년 7월 : 「예금·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모든 예금·적금 등에 관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명문으로 비밀을 보장함.

○ 1982년 7월 : 「금융실명거래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방침」을 발표(7·3 조치)

○ 1982년 12월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실시는 유보

○ 1983년 7월 :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단계별 차등중과세 실시

○ 1988년 10월 : 1991년 1월부터의 전면 실시계획 발표

○ 1989년 4월 : 재무부에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 설치 등 행정준비

○ 1990년 4월 : 경제여건 악화를 이유로 실시 유보발표

○ 1992년 10월 : 금융실명제 실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약속

○ 1993년 8월 12일 :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 실시

3.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주요 내용

- 1993년 8월 12일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뒷받침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 첫째,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 사용의무를 규정

○ 둘째,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를 규정

○ 셋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강화

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 사용의무

- 1993년 8월 12일 이후에는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보험·투자신탁·투자금융·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지명의를 사용해야 함. 그러나 실명사용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 국한됨.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간의 거래까지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만으로도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개인간의 사적 거래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실지명의 사용 여부는 금융기관이 실명확인증표를 이용하여 확인토록 하였는데 개인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그리고 법인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실명임을 확인받음. 실명확인증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증표이며, 법인이나 각종 단체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 발급사실 통보문서 등이 해당됨.

- 이와 함께 실명거래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

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 금융실명제는 미래지향적인 취지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다만,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부담해 온 선량한 예금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1)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 금지

- 금융실명제 실시일 현재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최초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자산은 인출을 금지함.

2) 실명전환 의무기간의 설정

- 금융실명제 실시일로부터 2개월간의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년 8월 12일~1993년 10월 12일)을 설정하여 기존 비실명자산의 거래자는 이 기간중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3)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 실명전환 의무기간 동안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간중 실명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

- 첫째, <표 Ⅰ-1>에서 보듯이 실명전환 계좌별로 다음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함.

<표 Ⅰ-1>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

대 상	긴급명령 제6조
20세 미만(미성년자)	1, 500만원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	3천만원 이하
30세 이상	5천만원 이하

- 둘째, 실명전환으로 인하여 상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벌칙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년 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때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벌칙이나 행정제재규정의 적용을 1년간 면제함. 예를 들어 실명전환으로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소유제한규정인 상장 당시 비율 또는 10% 대량소유규제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 내에 당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처벌을 면제함.

- 셋째, 종전의 실명형태, 예를 들어 차명으로 예입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종전 명의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과거 5년간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 즉, 일반저축의 경우에는 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20%(주민세 포함 21.5%)와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율 60%(주민세 포함 64.5%)의 차이만큼,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비과세 또는 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동 세율과 20%(주민세 포함 21.5%)의 차이만큼 소득세를 추징함. 이는 소득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4) 실명전환 의무기간 경과 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한 조치

- 첫째, 경과기간에 따라 금융실명제 실시일로부터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세율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 과징금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해 부과되는데,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자산가액에 <표 Ⅰ-2>에 제시된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원천징수하고 이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토록 하였음.

<표 Ⅰ-2> 과징금 징수비율

경 과 일 수	징 수 율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금융자산가액의 1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1년 초과~2년 이하	금융자산가액의 2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2년 초과~3년 이하	금융자산가액의 3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3년 초과~4년 이하	금융자산가액의 4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4년 초과~5년 이하	금융자산가액의 5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금융자산가액의 60%

주 : 과징금은 당해 금융자산에서 원천징수함.

- 둘째, 실명전환 의무기간 경과 후(1993년 10월 13일 이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종전 64.5%(소득세 60%, 주민세 4.5%)에서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로 인상하여 적용함.

5) 고액 현금인출 등의 국세청 통보

- 첫째,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

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자금이 불필요하게 유동화되는 것을 억제함.

- 둘째, 실명제 실시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 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점포별 월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함. 단,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실물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강화

-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긴급재정경제명령에서는 그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비밀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러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비밀준수의무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첫째,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둘째,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셋째, 재정경제원장관과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

독·검사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넷째,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섯째,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가 의무화된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임.

-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보제공을 요청하도록 제한하고, 문서에 의해 점포별로 요구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정보제공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음(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2항). 또한 부당한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3항)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4항).

-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으로서 정보를 누설한 금융기관 임직원,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자 및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누설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 처벌은 병과가 가능함. 또한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사용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4.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

- 1996년 12월 말 현재 실명예금의 실명확인율은 98.3%에 달하여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종료된 1993년 10월 12일에 비해 17.0%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가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은 98.8%에 달하고 있는 등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에도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 실적이 꾸준히 높아져 거의 대부분 실명확인 또는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표 Ⅰ-3>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

	단 위	확 인 시 점					증감 (B-A)
		1993.10.12 (A)	1994.8.12	1995.12.31	1996.6.30	1996.12.31 (B)	
실명예금 :							
대상금액	조원	405.4	405.4	405.5	405.5	405.5	
	(백만좌)	(175)	(175)	(175)	(175)		
실명확인금액	조원	329.5	382.9	396.6	398.0	398.7	+69.2
	(백만좌)	(105)	(136)	(149)	(151)		
확인율 : 금액	%	81.3	94.5	97.8	98.2	98.3	+17.0
계좌	(%)	(59.7)	(77.6)	(85.0)	(86.0)		
차명예금의 실명전환	억원 (천좌)	34,755 (415)	34,932 (852)	35,136 (3,220)	35,210 (3,556)	35,922	+1,167
실명예금의 미확인액	조원 (백만좌)	72.4 (70)	19.0 (38)	5.4 (23)	4 (21)	3.2	-69.2
가명예금 :							
대상금액	억원	28,342	28,342	28,417	28,417	28,417	
	(천좌)	(631)	(631)	(630)	(630)		
실명전환금	억원	27,604	27,808	28,046	28,059	28,073	+469
	(천좌)	(480)	(598)	(600)	(600)		
전환율 : 금액	%	97.4	98.1	98.7	98.7	98.8	+1.4
계좌	(%)	(76.1)	(94.8)	(95.2)	(95.2)		
미전환액	억원	738	534	371	358	344	-394
	(천좌)	(151)	(33)	(30)	(30)		
가·차명예금의 실명전환총액	억원 (천좌)	62,379 (895)	62,740 (1,450)	63,182 (3,820)	63,269 (4,156)	63,995	+1,616

주 : 1996년 12월 31일에 작성된 통계에서는 계좌수에 대한 자료는 집계되지 않음.
자료 : 재정경제원.

- 1996년 12월 말 현재 실명예금 중 미확인액은 3조 2천억원이고, 가명예금 중 실명미전환액은 344억원임.

Ⅱ. 금융실명제 보완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약 3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관련하여 성공여부와 보완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금융실명제가 외형적으로는 확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계 각층에서는 서로 다른 근거에 의해서 상이한 내용으로의 보완을 주장하고 있음.
  - ○주로 기업인과 정치권은 현행 금융실명제가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강하므로 상당수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온 반면 일부 식자층은 현행 금융실명제가 내용상 허점이 상당히 많으므로 좀더 강하게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음.
  - ○상당수 국민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경제정의가 실현되리라 기대했는데 현실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심지어는 구체적인 논리나 증거의 제시 없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모두 금융실명제의 실시 때문에 야기되었다는 주장도 있음.

- 금융실명제 보완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금융실명제 실시와 경제위기
  - ○금융실명제 실시와 과소비·저축감소
  - ○금융실명제와 국민 불편 및 비현실적 행정요소
  - ○금융실명제 실시에 의한 세무관련 불안감
  - ○지하자금의 양성화 및 산업자금화
  - ○한시적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항구적 법제화

1. 금융실명제 실시와 경제위기

- 최근에 우리 경제는 성장둔화 및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 일부 사람들은 오늘의 경제위기가 금융실명제 실시에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1995년까지 우리 경제는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을 겪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지하여 왔음(<부표 1> 참조).
  - ㅇ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소폭의 물가상승과 무역량 증가세의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으나 단기간에 안정된 수준으로 복귀함(<부표 2>, <부표 3> 참조).
  - ㅇ고용과 임금수준은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경기변동경로를 따른 것으로 보임(<부표 4> 참조).
  - ㅇ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총통화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으나 지금은 원상으로 회복되어 8%의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 또한 다소의 기복이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임(<부표 8>, <부표 9>, <부표 10> 참조).

-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소폭의 경기하락을 초래하였으나 단기간에 경제가 정상의 경기변동경로로 회귀한 사실을 감안하건데, 금융실명제가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성장 둔화, 물가 불안,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로 요약되는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은 지난 3년간의 호황에 뒤이은 경기후퇴, 주력수출상품의 가격폭락과 엔저현상이라는 단기적 요인, 그리고 흔히 '고비용·저효율'로 표현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 등의 세 가지 요인이 일시에 작용한 데 기인한 것

이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호황에 뒤이은 경기후퇴는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현상으로 믿어지는 경기변동의 한 국면으로서 다분히 불가피하고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임.

○ 주력수출상품의 가격폭락과 엔저현상이라는 단기적 요인 역시 상당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임.

○ '고비용·저효율'로 표현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향후 우리 경제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가장 큰 과제임.

- 현재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근본적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난 30여년간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비실명 금융관행은 계층간 소득 및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근로의욕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임금인상요구를 유발하였음.

○ 정부의 많은 개입과 규제는 시장의 의사결정 기능을 왜곡시켰으며 기업활동의 외부비용(external cost)을 유발하여 경제활동 의욕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경쟁력을 약화시켰음.

○ 음성적 자금거래의 확대는 금융거래를 왜곡하여 높은 이자율을 초래하여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켰음.

○ 또한 정당하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되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초래하여 서민들이 내집마련 꿈을 포기하고 월세에 살더라도 자가용이나 사고 보자는 식의 좌절적 소비를 조장하였으며 기업의 고정비용을 증가시켰음.

- 결론적으로 '고비용·저효율'로 표현되는 경제위기는 금융실명제 실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금융실명제가 과거에 보다 더 일찍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

에 발생된 시장질서의 왜곡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금융실명제 실시와 과소비·저축감소

-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과소비가 조장되고 저축률이 감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 국내 총저축률은 경기순환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1987년 39.2%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34.9%인 199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1996년의 경우 저축률이 다시 낮아져 34.6%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실명제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199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부진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부표 5> 참조).
  - ㅇ 1988년 이후의 총저축률의 하락은 경제성장의 둔화 및 피부양인구비율의 하락에 기인함.
  - ㅇ [그림 Ⅱ-1]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저축률의 하락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단기간 내 안정세를 보였음.

-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자금이 제도금융권에서 이탈하여 부동산 투기자금 혹은 사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기관의 수신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저축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부표 11>, <부표 12> 참조).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반응·대응하여 이동한 자금은 미미한 규모임. 제도 금융권 내에서의 자금이동을 제외하고는 실물시장 등 금융권 밖으로의 자금이탈 혹은 자금의 해외도피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결론적으

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됨.

[그림 Ⅱ-1] 저축률 추이(1970~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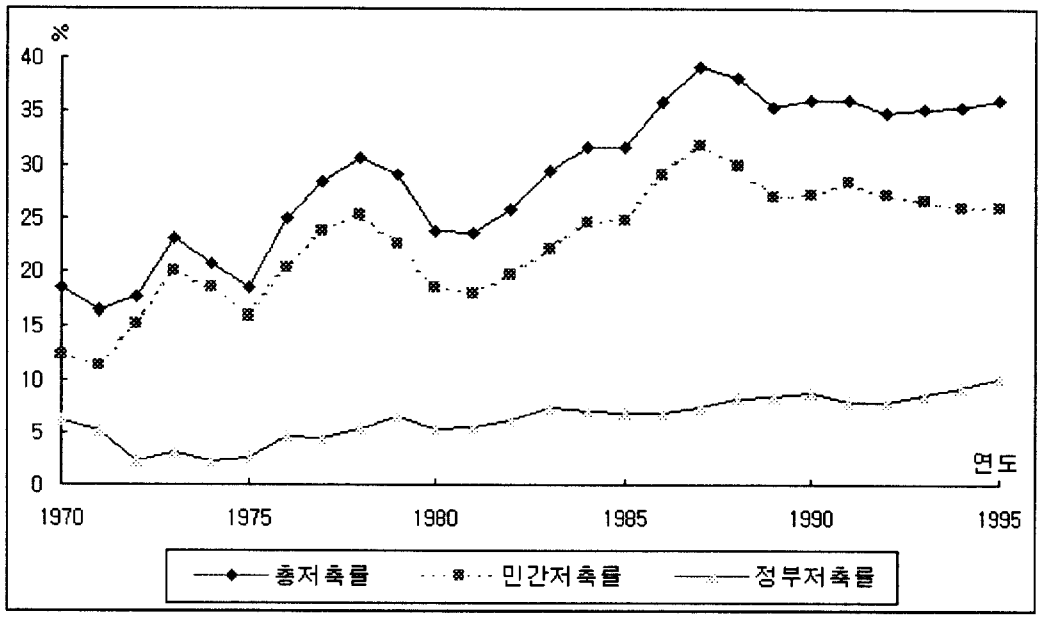

○ 1996년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종합과세가 실시됨으로써 자금이동이 일어났다면 1995년 말과 1996년 초이었을 것임. 1995년 말~1996년 2월의 기간중 6조 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규모의 자금이동이 있었으나 이러한 이동자금의 규모는 자금순환표 기준 1995년 9월 말 현재 개인보유 금융자산 잔액 442조원의 1.5%,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비금융부문보유 금융자산 약 900조원)의 0.7%에 불과한 수준임.

-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줄곧 정부는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금융저축에 대하여 세제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왔는데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가 강화되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내용과 종류가 확대되고 있음.

<표 Ⅱ-1>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자금이동 내역

(단위 : 10억원)

자 금 유 출				자 금 유 입			
	1995 년중	1996. 1~2	계		1995 년중	1996. 1~2	계
은행 정기예금	500	50	550	은행 타익신탁	400	200	600
은행 CD	1,300	400	1,700	은행 특정금전신탁	600	200	800
투금 CP	1,500	400	1,900	투신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	870	130	1,000
신용금고 정기예수금	400	50	450	증권 장기채권형 저축	1,200	200	1,400
기타(투금 CMA 등)	1,300	600	1,900	보험 장기저축성 보험	1,100	400	1,500
				채권 직접매입	830	370	1,200
합 계	5,000	1,500	6,500	합 계	5,000	1,500	6,500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각 호.

-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는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등이 있고 분리 과세되는 것으로는 장기채권, 그리고 각종 세제우대저축이 있음.

- 여기에 추가하여 정부는 새로운 세제지원 저축상품의 도입(근로자 우대저축, 상속증여세 면세 저축)과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불입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 비과세 상품의 구입한도는 근로자의 경우 월 383만원(연 4,600만원)이고 비근로자의 경우는 월 300만원(연 3,600만원)임.
  ㅇ 비과세 상품 이외에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저축의 내용은 <표 Ⅱ-2> 참조.

<표 Ⅱ-2>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가 되는 금융저축의 현황(1997. 3 현재)

상 품 명	1994.9.30이전 가입자	1995말 이전 가입자	1996년 이후 가입자	가입한도
근로자장기저축	비과세 (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비과세	10%	월 50만원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비과세, 세액공제	20%	15%	월 12만원
근로자주택저축	소득세, 상속세 비과세폐지(1993.1.31)	주택자금상환액의 10% 세액공제	15%, 소득공제	월 15만원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비과세	10%	월 10만원
장학적금	〃	〃	〃	200만원
국민주신탁	〃	〃	〃	월 60만이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	〃	월 50만원
근로자증권저축	비과세, 세액공제	〃 , 세액공제	〃	연 216만원
소액가계저축	5% (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5%	10%	1,800만원
노후생활연금신탁	〃	〃	〃	2,000만원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	〃	〃	2,000만원
소액채권저축	〃	〃	〃	1,800만원
우리사주저축	5%, 세액공제(〃)	〃 , 세액공제	〃	1,800만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장려금	비과세, 장려금	비과세, 1999년부터 10%	월 12만원
단위농·수·축협[1]	비과세	비과세	1997~1998:비과세	예탁금2천만원
신용협동조합[1]	〃	〃	1999:5%	출자금1천만원
새마을금고[1]	〃	〃	2000년이후 10%	〃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월 100만원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월 100만원
가계생활자금저축			10% 분리과세	1,200만원
가계장기저축			비과세 (1996.10~)	월 100만원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 세액공제	1,000만원
계	23			

주 : 1) 예탁금 및 출자금. 분리과세 장기채권은 제외.
자료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 분리과세 장기채권의 경우 현행제도상으로 개인당 구입한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최근 들어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로 저축이 감소하고 소위 '과소비'가 촉발되고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OECD 국가의 조세정책과 저축과의 관계에 관한 수많은 실증적 연구 결과도 세제가 저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ㅇ조세유인이 가계저축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되더라도 국민저축 증대효과는 미미하며 유인책으로 발생하는 정부 조세수입의 손실이 공공저축을 감소시켜 가계저축의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
  - ㅇ저축에 대한 조세유인이 가계저축 수준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반면 저축상품의 자산구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최근 민간소비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태를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우리 국민의 과시적 의식구조가 소득의 급증과 결부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금융실명제 혹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연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3. 금융실명제 실시에 의한 세무관련 불안감

-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본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안해 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금융실명제는 문자 그대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실지명의의 사용을 의

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과 동시에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탈세 및 부정·비리 방지는 개별 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달성할 필요가 있음.

○ 편법 상속·증여 및 과세자료 누락 등을 통한 탈세는 개별 세법의 규정을 통하여 차단하고

○ 부정·비리의 방지를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금융소득 자료에만 국한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함.

4. 금융실명제와 국민 불편 및 비현실적 행정요소

- 금융실명제 실시 1년에 즈음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아주 많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6.7%에 불과하고 몇 번(19.8%), 한 두 번(16.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편 및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57.2%로 나타났음.

- 또한 저축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설문에서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아주 많았다고 응답한 저축자는 전체 응답자의 3.0%에 불과하고 몇 번(26.1%), 한 두 번 (24.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편 및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46.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정부는 국민의 금융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명거래관행의 정착 정도를 참작하여 실명

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여 왔음(자세한 내용은 <부록 2> 참조).

- ○ 1994년 8월부터는 무통장입금(송금)의 경우 입금금액에 관계없이 입금의뢰서에 대리인의 실명과 본인의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하도록 하였음.
- ○ 1995년 9월에는 변칙적 운용소지가 적은 1일 30만원 이하의 소액 송금시에는 본인의 실명(대리인에 의한 경우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본인의 연락처, 관계 등) 기재와 본인의 서명에 의하여 실명확인에 갈음하도록 하였음.
- ○ 그 이후 실명확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지로고지서에 의한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로서 납부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하도록 하였음.

- 결론적으로 금융실명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거의 없으며 조금 있는 불편도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미 그러한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금융기관 이용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도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실명제의 근본을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실명확인의 실익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미 경과기간이 지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명전환 의무기간중의 고액 현금인출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전 발행된 5천만원 이상의 채권·증권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비현실적 행정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5. 지하자금의 양성화 및 산업자금화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제도금융권 밖으로 이탈하여 경색된 소위 '장롱 속의 뭉칫돈'과 사채시장에서 운영되는 자금 등을 가능한 한 양성화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소위 '장롱 속의 뭉칫돈'과 사채시장에서 운용되는 자금들은 속성상 외부의 노출을 꺼리는 자금임.
  - ㅇ현금으로 퇴장되어 경색된 자금은 사치성 소비행위에 사용되거나 다른 여러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를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하여 산업자금화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ㅇ사채시장에서 운용되는 자금들은 이미 여러가지 경로로 사용되어 고수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

6. 한시적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항구적 법제화

- 금융실명제를 국회에서 법개정을 거쳐 실시할 경우 그 논의과정에서 실명을 꺼리는 음성자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여 경제적 위기가 초래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실명제 실시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많았음.

-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실시가 불가피했음.
  ㅇ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 실시는 무엇보다도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대규모 자금이탈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었음.

- 금융실명제가 실시 된지 3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전히 긴급재정경제명령 상태로 되어 있는 금융실명제를 정상 입법화함으로써 법형식상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제도로의 정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종합의견

- 성장의 둔화와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로 정리할 수 있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만의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서 초래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실명확인의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자금을 가능한 한 양성화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자금 등 산업자금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실명제가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체입법을 통해서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고 세제 및 자금세탁방지법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을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부정·비리를 방지하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함.

-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하여 분분한 소모적인 논쟁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향으로 마무리하고 현재의 경제난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국력을 집결하여 국가의 장기적 발전 자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Ⅲ.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1.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의 기본방향

-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금융실명제의 보완과 관련하여 1997년 3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실명제 본질 유지
  -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 세제를 중심으로 금융실명제 정비
  - ○금융저축 등 금융거래에 대한 세무관련 불안감 해소
  -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유도
  -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체입법화 추진
  - ○부정·비리의 방지를 위해서 「자금세탁방지법」의 별도 입법을 추진하여 금융실명제와 역할 분담

2.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가. 금융저축 등 금융거래에 대한 세무관련 불안감 해소

- 종합과세 최고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 허용
- 금융기관의 과세자료 통보는 금융소득 자료에 국한하고 고액 현금인출통보

및 자금출처조사 관련 규정 삭제

-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엄격한 준수

나.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실명의무화해도 실익이 없는 거래의 실명확인 배제 등 실명거래 대상의 합리적 조정.

다.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 차명거래자금 및 퇴장현금 등의 양성화가 필요한바, 중소기업 자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관련 출자자금 등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일정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 면제.

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체입법화 추진

- 긴급재정경제명령 상태로 되어 있는 금융실명제를 정상 입법화함으로써 법형식상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을 추진함.

마. 금융실명제 관련 제도의 정비

- 부정·비리의 방지를 위해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금융실명제와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함.

바. 금융실명제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한 인식 제고

- 금융실명제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3. 금융저축 등 금융거래에 따른 세무관련 불안감 해소

가. 최고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 허용

◆ **현행 5년 이상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용(5년 이상 채권 및 저축 : 30%, 10년 이상 채권 : 25%)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

- 본 정책방안을 제시한 목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되면 과세당국(국세청)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로 인해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하거나 차명거래를 하는 저축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줌으로써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유도하고 지하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데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금융상품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자료를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

-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경우 : 이 경우에는 최고세율(40%)에 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더라도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제도권 밖에서 현금화되어 경색된 자금이나, 차명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금이나,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자금(3조 2천억원 : 상당수의 휴면계좌가 포함되어 있음) 중 일부는 자금출처조사를 기피하려는 자금들이기 때문임.

-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 이 경우에는 상당규모의 자금이 이 금융상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이 금융상품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자신의 전소득이 합산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자산을 분리과세로 선택

○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퇴장되어 경색된 자금

○ 절세 목적 이외의 차명계좌로 유지되던 자금

○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자금

- 종합과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고 해당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제상의 공평과세 취지는 훼손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40%의 소득세를 부담하면 해당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서 자금출처조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므로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상속·증여세제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킬 것이며 나아가 상속·증여세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음.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고 자금출처조사를 원천봉쇄하면 세금없는 부의 세습 등으로 인해 공평과세의 실현에 역행하는 심대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
  ○현재 피상속인에 한해서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는 것을 상속인으로 확대.
  ○미성년자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함.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괄 조회 허용.

나. 국세청에 통보하는 금융자료는 금융소득자료에 국한

◆ 종합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자료 통보 이외에 일체 금융자료의 국세청에의 통보제도를 원칙적으로 제거함

- 현행 제도하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금융소득자료에만 국한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의 미흡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거래 내용은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된다는 등 잘못된 통념이 존재하고 있음.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당시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년 8월 12일~1993년 10월 12일)중에 한하여 예금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량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국민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로 인해 1993년 9월 24일 후속조치시 이미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인출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도록 한 바 있음.

-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금융실명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다. 고액 현금인출통보 및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규정 삭제

◆ 실명전환 의무기간중의 고액 현금인출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발행된 5천만원 이상의 채권·증권거래의 국세청 통보제도 폐지

- 고액 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거래내용 통보조항은 이미 그 적용 여지가 사라졌으므로 대체입법시 삭제하고 잘못 알려진 자료통보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본 방안은 대체입법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6조를 삭제하고 실명전환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만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임.
  - ㅇ이는 금융실명제 실시 자체를 불평하는 계층의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 ㅇ그러나 이는 이미 실명전환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ㅇ또한 이는 제도권 내에 있는 실명미확인액 3조 2천억원(계좌당 평균 16만 8천원)의 일부분이 실명전환과 동시에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현금으로 퇴장될 우려가 상당히 있으며 이 경우 개별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사하

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 최고율(60%)을 하향 조정**

- 본 사항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조 관련 사항으로, 과징금 최고율을 60%로 한 것은 1993년 8월 12일 당시에 증여세 최고세율이 60%이었던 것을 참고로 하여 설정되었음.

- 현재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최고세율이 45%로 당시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최고율은 이에 상응하게 40% 또는 45%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안 : 40%
  ○ 제2안 : 45%

- 다만 현재까지 40%의 과징금을 물더라도 실명확인을 기피하는 자금(물론 여기에는 상당수의 휴면계좌가 포함되어 있음)에 대하여 과징금의 최고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필요함.

라.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엄격한 준수

◆ **현행 금융거래 비밀보장제도는 지나치게 강하여 범죄수사 및 금융감독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비밀보장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등 비밀보장이 잘 지켜지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함**

-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

명의자의 신분 등 관련 정보가 국가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

- 경제범죄행위의 차단을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내용을 충실히할 필요가 있음.

4.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 그동안 지침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편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으나 추가로 간소화할 사항이 있으면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한국조세연구원이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에 즈음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조그만 불편의 해소를 위해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 또는 제외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는 편이 타당할 것임.

- 보험거래는 기본적으로 성격상 당연히 실명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므로 실명법에서 별도로 실명확인토록 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ㅇ현재 보험계약은 대부분 모집인 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금융거래종사자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 이행이 곤란함.

◆ **제1안 : 모든 보험거래를 실명대상에서 제외**

◆ **제2안 :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실명대상에서 제외**

- 문제점 : 보험성격상 당연히 실명확인 한다면 실명법에서 제외할 실익이 없음. 제1안의 경우 저축성보험은 일반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서, 저축성 보험을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의 자금이동이 예상되어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제2안의 경우 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절차의 이행이 곤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

◆ **신분증 제시없이 송금 가능한 금액범위를 현행 30만원에서 상향조정**

- 현행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혹은 일부에서 제안되는 상한철폐를 고려할 수 있음.
  - ㅇ 제1안 : 50만원
  - ㅇ 제2안 : 100만원
  - ㅇ 제3안 : 상한 철폐

- 제1안 및 제2안은 변칙적인 운용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송금자의 불편해소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제3안의 경우 송금자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나, 비록 송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가 실명일지라도, 송금하는 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변칙적인 운영 소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우려됨.

- 그리고 금액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특정인의 특정계좌에 계속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정기준을 세워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5. 지하자금을 중소기업 관련 자금으로의 양성화 유도

◆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자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부담금을 납부한 중소기업투입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

가.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

- 중소기업에의 출자금
  - ㅇ법인인 중소기업(조감법 시행령 §2)에 직접 출자한 자금
    ※조감법 시행령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동차 정비공장 운영업, 의료기관 운영업, 폐기물 처리업임.
  - ㅇ벤처자금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 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 사업조합에 출자한 자금

-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의 출자금
  - ㅇ제1금융권 : 중소기업은행, 대동은행, 동남은행, 국민은행, 지방은행
  - ㅇ제2금융권 : 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향후 설립될 여신전문금융회사

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의 범위

- 창업출자 및 증자에 한함
  - ㅇ기존 지분의 양수 등에 의한 출자는 새로운 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

- 미성년자 명의의 출자금은 증여가 명백하므로 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

다. 출자 부담금의 부과

- 부과대상
  - ㅇ자금출처면제를 선택하는 경우, 출자부담금을 부과 다만, 중소기업에의 직접 출자금 및 벤처자금은 투자리스크가 크므로 출자부담금 면제
  - ㅇ출자부담금이 부과되었거나 출자부담금이 면제된 당해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

- 중소기업에의 직접 출자금 및 벤처자금의 경우 출자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출자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유령 중소기업의 설립 등을 통해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가 발생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부과율 : 증여세 부담액과 양성화 유인을 감안하여 결정
  - ㅇ(제1안) : 10%
    (제2안) : 20%

(제3안) : 건당 출자액 1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부과함.

<표 Ⅲ-1> 증여가액별 실효세율

(단위 : 억원, %)

증 여 액	1	5	10	20	30	50	100
증여세액	0.1	0.9	2.4	6.4	10.4	18.4	40.9
실효세율	10	18	24	32	32.7	36.8	40.9

자료 : 재정경제원.

○ 단일률로 부과하는 것이 집행상 용이한 점은 있으나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출자액의 규모에 따라 부과율을 달리할 경우 분산출자할 여지가 있음.

- 부담금 사용용도

○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함.

라. 의무출자기간 : 5년 이상

- 당해 자금이 자금세탁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5년 이상의 의무출자기간을 부여함.

- 의무출자기간내에 출자금을 회수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함.

- 다만, 출자자의 사망 또는 법인(조합)의 청산·해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ㅇ그러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법인(조합)을 청산·해산하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를 실시함.

마. 시행기간 : 6개월(필요시 1회 연장)

- 현행 조세체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이므로, 6개월 동안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신설

-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문제의 소재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하나의 방안으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신설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

6.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체입법화 추진

◆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입법화하여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

- 현재 금융실명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형태를 입법화하여 법률 형태로 금융실명제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ㅇ실시 수년이 지났는데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특정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대체입법으로 금융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세법 및 불법·비리 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각기의 역할분담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7. 금융실명제 관련 제도의 정비

가. 기본방향

-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며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함.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금융실명제 자체의 보완보다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임.
  ○ 국가전체의 정책적 목표를 두고 세법, 자금세탁방지법, 정치자금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의 관련 제도와의 유기적 조화가 필요함.

- 금융실명제 실시 시점에서 더불어 추진되어야 했던 것으로 그동안 정책당국이 미처 연계하여 생각해 보지 못했거나 등한시하였던 몇 가지 정책들의 시행을 금융실명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 자금세탁방지법의 목적은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의 원천을 차단하여 불법경제를 축소하는 데 있음. 이러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주요골자는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인출시 이를 금융기관이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것임.

- 외국에서는 이미 불법경제(마약, 밀수, 뇌물, 매춘)의 축소를 위하여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8. 1997년 2월에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추진 보류

- 1997년 2월에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리과세 세율인하 및 요건완화
  - 5년 이상 장기채권 및 저축에 대한 30%의 분리과세를 4년 이상의 경우 25%로 하향 조정함.
  -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25%의 분리과세를 8년 이상의 경우 20%로 하향 조정함.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을 신설함.
  - 가입대상자 : 20세 미만 1자녀 1통장
  - 저축불입기간 및 한도 : 5년(5천만원), 10년(1억원)

- 위의 보완대책은 이번에 제시된 전반적인 금융실명제 보완방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의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9. 금융실명제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한 인식 제고

- 금융실명제 도입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금융실명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인식시킨 것이 큰 문제이며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내용을 구체적으

로 모르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알고 있음.

- 금융실명제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잘못된 통념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왜곡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ㅇ모든 형태의 거래가 금융실명제의 대상임.
  - ㅇ금융기관을 통한 모든 거래는 국세청이 감시하고 있음.
  - ㅇ금융실명제로 인해서 모든 거래가 투명해져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ㅇ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대부분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함.
  - ㅇ과소비, 사업의욕의 상실 등 많은 문제가 금융실명제로 야기되었음.
  - ㅇ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인출자료를 모두 세무조사에 활용함.

-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금융자료는 금융소득자료에 한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모든 금융거래내역이 통보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
  - ㅇ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금융실명제는 공적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의 신분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엄격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신분 및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ㅇ따라서 비밀보장 규정이 엄격히 운영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비밀보장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부 록>

<부록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1조(목적) 이 명령은 실지명의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기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명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한국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나)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다)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라)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와 그 연합회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사)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아)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금고와 그 연합회

(카)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 개서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파)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하) 체신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거)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보험료·공제료·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라 함은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 전에 금융거래계좌가 개설된 금융자산(이하 "기존 금융자산"이라 한다)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 후 최초의 금융거래가 있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 금융자산을 지급·상환·환급·환매 등(이하 "지급 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어음·수표의 결제에 따른 지급 등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지급 등이 불가피하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정보 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3. 재정경제원장관·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4. 동일 금융기관의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특정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

③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 각 호의 규정(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그 정보 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의무) ①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기존 금융자산(이하 "기존 비실명자산"이라 한다)의 거래자는 이 명령 시행일부터 2월(이하 "실명전환의무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명전환 의무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가 대리의 방법에 의하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명전환 의무기간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 의무기간을 이 명령 시행일부터 6월로 한다. 다만 6월 이내에 실명전환을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월로 한다.

제6조(실명전환금융자산에 대한 세무조사 등의 특례)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 비실명자산으로서 이 명령 시행일 현재 당해 금융자산의 가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명전환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그 금융자산을 과세자료로 하여 이 명령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금융자산 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 미만인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
2. 당해 금융거래자가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
3. 당해 금융거래자가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7조(실명전환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①금융기관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하여는 이 명령 시행일(제5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현재의 금융자산가액에 다음의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명령 시행일부터 계산한 기간	징 수 율
1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10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20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30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40
4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100분의 50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100분의 60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경우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징수하여야 할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납부하지 아니한 과징금 또는 미달한 과징금 외에 그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③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납부·체납처분 및 환급(이하 "징수 등"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를 "과징금"으로 본다.

제8조(실명전환자산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①금융기관은 실명으로 전환된 기존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한 실명전환일(실명전환의무기간 경과 후에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실명전환 의무기간 만료일)까지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등과세율 및 소득세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발생당시에 적용되던 원천징수세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적용하여 종전에 부족하게 징수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실명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또는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이 비과세되거나 저율분리과세되는 기존 비실명자산이 실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은 실명전환일 현재의 해당 금융자산가액을 한도로 한다.

③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비실명 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이 경우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10조(고액 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거래내용 통보) ①금융기관은 실명전환의 무기간중 개인인 금융거래자에 대하여 계좌별로 현금(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지급한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명전환의무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이 명령 시행 전에 발행된 채권·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와 기타 증서 또는 증권의 인도에 의하여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금융자산(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을 금융기간에 예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자와 당해 채권 등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를 한 경우에 당해 채권 등의 거래가격(양도성예금증서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해 채권 등을 총리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경우
2. 당해 거래자가 법인세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금융실명거래 및 종합과세의 추진) 정부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명거래를 원활히 실시하고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시행준비를 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제12조(벌칙) ①제4조 각 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는 재정경제원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부과하며,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2조 또는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타의 법률과의 관계) ①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②이 명령의 규정과 기타의 법률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명령에 의한다. ③기존 비실명자산의 거래자가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라 상법·증권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벌칙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이 명령시행 후 1년 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때에는 그 벌칙 또는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이 명령 시행당시 소득세법 제14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의 사채를 소유한 자 및 동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소액주주(이하 "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던 자가 실명전환 의무기간 내에 기존 비실명자산을 실명으로 전환함에 따

라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이 명령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명령 제8조 및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신용보증기금 등의 보증한도 확대) 재정경제원장관은 중소기업 등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을 확대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명령 시행후 6월의 범위 안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제25조 제1항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한도를 2배까지 확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시) 이 명령은 1993년 8월 12일 20시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표절차) 이 명령과 이 명령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은 방송 또는 일간신문에의 게재에 의하여 공표할 수 있다.
제3조(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변경 등) 재정경제원장관은 이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의 정지 또는 영업시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록 2>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확인 절차 간소화 조치

1. 1994. 2. 17 조치

항 목	내 용
① 사회복지법인에 송금시 실명확인 간소화	-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10만원 이하 소액송금시 실명확인 생략
② 소규모 금융기관의 실명확인증표 사본징구 생략	- 자산 10억원 이하의 우체국, 신탁, 새마을금고의 경우 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증표의 사본징구를 생략
③ 소년·소녀 가장 실명확인 간소화	-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소년·소녀 가장으로 확인되는 경우 당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2. 1994. 5. 10 조치

항 목	내 용
① 금융거래자별 실명확인 간소화	- 유치원 및 초·중·고생의 경우 장학적금 단체가입시 학교장의 확인서류로 일괄확인하고, 군인·경찰의 경우 부대장·경찰관서장의 확인서류로 가입자의 실명을 확인
② 대리의 경우 위임장 징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족범위 확대	-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징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외에 주민등록등본상의 동일세대원, 호적등본상의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의료보험카드상의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도 포함
③ 제세공과금 등을 수표로 납부시 실명확인방법 개선	- 제세공과금 또는 대출원리금을 수표로 납부하는 경우 수표이면에 고지서에 기재된 명의인의 성명과 납부내용 또는 대출금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실명확인 갈음
④ 종합통장에 의한 거래시 실명확인 간소화	- 1994. 1. 17 이후 개설하는 종합통장은 통장을 개설하는 때에만 실명확인증표사본 보관(거래예금 종목 등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보관을 생략)

3. 1994. 8. 11 조치

항 목	내 용
① 대리인에 의한 무통장입금 등 간소화	- 대리인에 의한 무통장입금액이 10만원 초과시에도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본인 실명은 기재)
② 학생의 금융거래 방법 간소화	- 유치원·초·중·고생이 학교를 통해 단체로 예금을 하는 경우 장학적금과 같이 학교장이 실명확인한 서류에 의해 실명확인

4. 1995. 9. 23 조치

항 목	내 용
① 소액송금시 실명확인 간소화	- 1일 30만원 이하의 소액송금에 대하여는 주민등록증 제시없이 본인의 실명기재와 서명으로 실명확인 갈음
② 종업원 예금계좌개설시 실명확인 간소화	- 종업원의 급여에서 일괄 납입하거나 이체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명확인한 서류로 실명확인 갈음
③ 전환신규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간소화	- 동일 점포에서 실명확인된 기존계좌를 폐쇄하고 기존계좌와 같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경우에는 실명확인증표 사본의 추가 징구없이 기존의 실명확인증표 사용
④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실명확인 간소화	-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실명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시는 금융거래 일반관행에 따라 실명확인을 생략

5. 1995. 11. 15 조치

항 목	내 용
① 대학생의 일괄계좌 개설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 대학생의 경우도 초·중·고학생의 경우와 같이 학교장(총·학장)이 실명을 확인한 서류로 계좌 개설(다만 실명확인증표 사본 첨부)
② 유치원의 수업료 납부시 실명확인절차 간소화	- 유치원의 수업료 납부의 경우도 초·중·고·대학생의 수업료 납부의 경우와 같이 실명확인 절차 생략

6. 1995. 12. 1 조치

항 목	내 용
① 임의단체의 금융거래방법 간소화	- 임의단체 대표자가 임의단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임의단체 대표자 개인의 금융거래와 임의단체의 거래를 구분(국세청에도 구분 통보)

7. 1996. 1. 16 조치

항 목	내 용
① 해외 거주자 계좌개설 간소화	- 외국인 등 해외거주자는 본인이 직접 입국하지 않고, 해외에 있는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점포에서 실명확인 후 국내 계좌개설
② 지로고지서에 의한 경우 실명확인 생략	- 지로고지서에 의한 30만원 이하의 입금에 대해서는 공과금이 아닌 경우에도 실명확인 생략
③ 수표·어음의 무통장 입금시 실명확인 생략	- 수표·어음의 무통장입금시 입금의뢰서만 실명확인하고 수표·어음에는 입금되는 계좌번호를 표시
④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여 직계존비속 확인	- 재외국민등록부에 의하여 대리인이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로 실명확인
⑤ 교도소 재소자 실명확인	- 교도소 재소자도 군인·경찰의 경우와 같이 관서장(교도소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에 의하여 실명확인

<부록 3>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주요 경제지표 동향

<부표 1>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1/4	2/4	3/4
GDP성장률	9.1	5.1	5.8	4.1	4.9	6.9	6.7	8.6	9.1	7.9	7.8	9.4	9.0	10.0	9.7	9.8	6.8	7.9	6.8	6.4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 호.

<부표 2> 물가 동향

(단위 : 전년동월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6	12	6	12	6	12	6	12	6	12
소비자 물가	6.8	4.5	4.8	5.8	5.9	5.6	4.3	4.7	5.5	4.5
생산자 물가	2.7	1.6	2.7	2.0	1.9	3.9	5.9	3.4	1.6	3.5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 호.
한국은행, 『월중경제동향』, 각 호.

<부표 3> 수출입 동향

(단위 : 억달러, %)

	1992		1993		1994		1995		1996	
	1~6	7~12	1~6	7~12	1~6	7~12	1~6	7~12	1~6	7~12
수 출	367.2	399.2	389.2	433.1	437.1	523.0	582.4	668.2	646.8	651.5
	(8.4)	(5.1)	(6.0)	(8.5)	(12.3)	(20.7)	(33.2)	(27.8)	(11.1)	(-2.5)
수 입	419.0	398.7	413.0	425.0	473.6	549.9	652.6	698.5	727.3	774.9
	(4.3)	(-3.7)	(-1.4)	(6.6)	(14.7)	(29.4)	(37.8)	(27.0)	(11.4)	(10.9)
경상수지	-44.7	-1.4	-11.7	15.6	-25.8	-19.5	-59.9	-28.3	-98.8	-138.4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 호.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주요지표』, 각 호.

<부표 4> 실업률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 건)

	1992	1993		1994		1995		1996	
		1~6	7~12	1~6	7~12	1~6	7~12	1~6	7~12
실업률	2.4	3.0	2.6	2.7	2.1	2.2	1.9	2.1	1.9
전산업 명목임금 상승률	15.2	12.9	11.5	11.4	13.7	11.5	10.9	12.6	12.4[1)]
분규발생건수	235	68	76	46	75	38	50	41	44

주 : 1) 1996년 7~11월의 전년동기대비 상승률.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 호.
한국노동연구원,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1995. 2/4분기~4/4분기.
한국개발연구원, 『경제동향주요지표』, 1997. 2.

<부표 5> 경제주체별 저축률 및 투자율 추이

(단위 : %)

	저 축 률					투 자 율					
	민간부문			정 부 부 문	총저축률	민간부문			정 부 부 문	대외 투자율	총투자율
	개인	기업	소계			개인	기업	소계			
1970	-	-	12.3	6.1	18.4	-	-	19.7	5.1	-7.0	17.8
1971	-	-	11.3	5.1	16.4	-	-	20.7	4.5	-8.7	16.6
1972	-	-	15.3	2.3	17.6	-	-	17.7	3.6	-3.4	17.9
1973	-	-	20.0	3.1	23.0	-	-	22.4	3.2	-2.2	23.4
1974	-	-	18.5	2.2	20.7	-	-	29.4	2.8	-10.7	21.5
1975	8.1	7.6	15.7	2.6	18.3	3.5	21.9	25.4	3.5	-9.0	20.0
1976	11.4	8.6	20.1	4.6	24.7	5.2	18.6	23.8	3.2	-1.1	26.0
1977	13.5	10.1	23.6	4.5	28.1	4.7	20.6	25.3	3.7	0.1	29.1
1978	15.5	9.9	25.4	5.3	30.7	7.9	21.5	29.4	4.0	-2.1	31.2
1979	13.1	9.5	22.6	6.5	29.1	7.7	24.3	32.0	4.4	-6.5	29.9
1980	8.7	9.9	18.6	5.3	23.8	6.0	22.1	28.1	4.7	-8.7	24.0
1981	8.9	9.2	18.1	5.4	23.5	4.8	21.5	26.2	4.4	-6.8	23.9
1982	9.9	9.4	19.3	5.9	25.2	3.4	22.6	26.0	5.9	-5.8	26.0
1983	9.9	11.3	21.2	6.9	28.1	5.9	19.4	25.3	6.9	-4.3	28.0
1984	12.3	11.6	23.9	6.5	30.4	7.0	19.6	26.6	6.5	-3.5	29.6
1985	12.2	11.8	24.0	6.2	30.2	6.2	19.8	26.0	6.2	-2.5	29.7
1986	15.5	12.6	28.1	6.8	34.9	6.2	19.4	25.6	6.0	2.2	33.9
1987	17.8	14.2	32.0	7.1	39.2	7.1	19.6	26.7	6.7	4.4	37.8
1988	17.5	13.6	31.1	7.8	38.9	9.4	18.2	27.6	7.9	3.8	39.3
1989	16.7	11.8	28.5	7.9	36.4	9.4	20.7	30.1	7.9	-1.8	36.2
1990	15.4	12.2	27.5	8.5	36.1	8.4	24.4	32.9	8.5	-5.1	36.3
1991	17.0	11.3	28.3	7.8	36.1	10.1	24.0	34.0	7.8	-5.6	36.2
1992	15.8	11.4	27.1	7.8	34.9	8.9	22.4	31.3	7.8	-3.7	35.4
1993	14.4	12.3	26.7	8.5	35.2	8.3	21.9	30.1	5.1	0.1	35.4
1994	13.9	12.2	26.1	9.3	35.4	7.0	24.3	31.3	5.0	-1.2	35.1
1995	-	-	25.7	10.6	36.2	-	-	32.5	4.9	-2.0	35.4
1996	-	-	23.7	10.8	34.6	-	-	33.1	5.5	-5.0	33.6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1994.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1996. 4.

<부표 6> 지가지수 추이

	1993		1994		1995		1996	
	6	12	6	12	6	12	6	12
지 가 지 수	96.71	92.62	92.00	92.09	100.20	100.55	101.01	101.21
전기대비 증감폭	-3.30	-4.28	-0.67	0.09	0.21	0.35	0.46	0.20

주 : 1995년 1월의 지가지수를 100으로 함.
자료 : 건설교통부, 『지가동향』, 각 호.
주택은행, 『주택금융』, 각 호.

<부표 7>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추이

	1993		1994		1995		1996	
	6	12	6	12	6	12	6	12
매 매	101.1	100.3	100.1	100.2	100.1	100.0	100.6	101.5
전 세	91.8	92.3	94.7	96.5	99.3	100.0	103.9	106.5

주 : 1995년 12월의 주택매매 및 전세가격지수를 100으로 함.
자료 : 주택은행,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각 호.

<부록 4>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의 금융시장 동향

<부표 8> 현금통화 추이

(단위 : 억원, %)

	1992		1993				
	6	12	7	8	9	10	11
현금통화잔액	66,006	76,505	85,999	92,832	107,659	111,633	105,366
	(8.0)	(9.4)	(28.2)	(35.5)	(39.5)	(55.4)	(45.1)
총통화잔액	843,459	943,515	1,021,642	1,038,499	1,076,093	1,087,759	1,089,047
	(18.4)	(18.6)	(18.9)	(20.6)	(21.5)	(20.8)	(18.4)
현금/총통화	7.8	8.1	8.4	8.9	10.0	10.3	9.7

	1993	1994		1995		1996	
	12	6	12	6	12	6	11
현금통화잔액	109,222	106,177	131,272	118,225	132,985	127,183	136,827
	(42.8)	(25.3)	(22.1)	(11.3)	(12.4)	(7.6)	(7.9)
총통화잔액	1,106,998	1,160,725	1,310,314	1,345,589	1,479,731	1,564,005	1,695,919
	(17.3)	(15.8)	(17.6)	(15.9)	(13.7)	(16.2)	(18.2)
현금/총통화	9.9	9.1	9.1	8.8	9.0	8.1	8.2

주 : ( )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 호.
한국은행, 『월중경제동향』, 각 호.

<부표 9> 각종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 평잔기준 전년동월대비, %)

	1992		1993							1994		1995		1996	
	6	12	6	7	8	9	10	11	12	6	12	6	12	6	11
본원통화	8.9	9.1	20.5	20.0	24.6	24.9	36.4	28.4	22.9	18.6	13.6	12.8	11.3	-0.1	-8.3
M1	35.3	29.5	20.2	18.9	23.3	25.4	24.6	21.6	20.6	14.5	9.6	12.2	12.7	9.8	6.1
M2	18.4	18.6	18.9	18.9	20.6	21.5	20.8	18.4	17.3	15.8	17.6	15.9	13.7	16.2	19.9
M3[1)]	21.8	20.9	21.5	21.6	22.1	22.3	20.1	19.9	19.0	22.7	24.7	19.2	19.1	20.1	17.4

주 : 1) 말잔기준.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한국은행, 『월중경제동향』, 각 호.

<부표 10> 금리 추이

(단위 : 월중평균, %)

	1992	1993						1994		1995		1996	
	12	7	8	9	10	11	12	6	12	6	12	6	12
콜금리(전체평균)	13.52	14.01	13.53	12.55	12.17	11.50	11.55	12.59	14.00	12.70	10.98	12.38	12.51
회사채유통수익률(3년)	14.00	12.88	13.81	14.04	13.37	12.83	12.21	12.40	14.22	14.67	11.65	11.55	12.57
CD유통수익률(91일)	15.19	13.25	14.87	14.71	13.89	12.90	12.27	12.49	14.85	14.73	11.73	12.18	13.53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 호.

<부표 11> 금융권별 수신 추이

(단위 : 증감액, 억원)

	1993				1994			
	1/4	2/4	3/4	4/4	1/4	2/4	3/4	4/4
은행수신	18,245 (1.66)	26,924 (2.41)	44,643 (3.90)	65,502 (5.50)	37,458 (2.98)	54,834 (4.24)	67,021 (4.97)	92,370 (6.53)
금전신탁	45,630 (8.57)	58,375 (10.10)	50,863 (7.99)	84,411 (12.28)	84,664 (10.97)	98,323 (11.48)	80,055 (8.38)	38,111 (3.68)
투자금융	-3,319 (-3.22)	522 (0.51)	2,187 (2.11)	4,994 (4.72)	8,165 (7.37)	7,978 (6.71)	1,343 (1.06)	9,270 (7.23)
투자신탁	82,101 (25.21)	51,946 (12.74)	-20,593 (-4.48)	10,423 (2.37)	49,350 (10.98)	26,479 (5.31)	-13,128 (-2.50)	19,933 (3.89)
계	142,657	137,767	81,880	172,512	187,739	190,519	135,628	160,944
	1995				1996			
	1/4	2/4	3/4	4/4	1/4	2/4	3/4	4/4[1]
은행수신	35,755 (2.37)	52,693 (3.41)	83,715 (5.24)	84,950 (5.06)	13,546 (0.77)	90,963 (5.09)	133,693 (7.15)	56,815 (2.84)
금전신탁	58,597 (5.46)	118,489 (10.47)	88,145 (7.05)	128,742 (9.62)	104,604 (7.13)	95,873 (6.10)	46,554 (2.79)	19,174 (1.12)
투자금융[2] (종합금융)	-15,659 (-11.39)	-4,616 (-3.78)	-8,110 (-6.92)	18,881 (17.30)	9,552 (7.46)	-3,881 (-2.82)	-11,910 (-5.79)	-419 (-0.21)
투자신탁	2,740 (0.51)	8,709 (1.63)	9,531 (1.75)	35,868 (6.48)	18,261 (3.10)	51,624 (8.50)	9,846 (1.49)	3,219 (0.48)
계	95,416	173,264	168,443	274,784	145,289	234,577	178,183	78,789

주 : 1) 10~11월 수신액의 전기대비 증감액임.
2) 1996년 3/4분기 이후 금액은 투자금융사의 종금사 전환으로 인하여 두 기관의 합산금액임.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 호.

<부표 12> 금융저축 동향

(단위 : 연말잔액, 조원)

	1992	1993	1994	1995	1996
은행저축성예금	70.7	82.5	100.1	116.1	132.6
C D	11.9	16.5	20.5	28.4	30.5
제2금융권 저축	215.4	277.3	347.4	433.5	505.8
국·공·금 융 채	22.8	41.8	50.2	65.7	75.5
주 식	35.4	38.4	44.3	50.6	54.1
회 사 채	35.1	40.1	48.2	61.6	72.0
부문간 거래(-)	56.0	76.2	99.2	130.4	148.2
계	335.3	420.4	511.6	625.4	722.3

자료 : 재정경제원, 『재정금융통계』, 각 호.

<부표 13> 주식시장 동향

(단위 : 포인트, 만주)

	1992		1993					
	6	12	6	7	8.12	8	9	10
월(일)평균 주가지수	564.5	650.3	760.4	752.0	725.9	664.9	692.5	733.0
일평균 거래량	1,673	3,688	5,012	2,350	1,470	1,670	2,019	2,959

	1993		1994		1995		1996	
	11	12	6	12	6	12	6	12
월(일)평균 주가지수	798.4	848.8	926.7	1,040.7	884.3	918.1	867.7	690.6
일평균 거래량	4,837	4,360	3,587	4,152	1,916	1,810	2,011	2,656

자료 : 한국은행, 『통화금융』, 각 호.
증권거래소, 『주식』, 각 호.

<부표 14> 채권거래대금

(단위 : 억원)

	1992		1993				1994		1995		1996	
	6	12	7	8	9	12	6	12	6	12	6	12
일평균 거래량	4.5[1)]	2,658	3,042	2,355	3,764	5,371	5,667	3,682	7,532	10,503	7,413	5,154

주 : 1) 장외거래 제외 금액.
자료 : 재정경제원, 『월간경제동향』, 각 호.

<부표 15> 분기별 보험료수입 추이

(단위 : 억원)

	상 품 별		
	생 보 사		손 보 사
	보장성보험	저축성보험	손해보험
1993. 3/4	5,306	50,149	16,349
4/4	5,917	61,737	18,475
1994. 1/4	6,598	53,582	17,915
2/4	8,158	51,121	18,131
3/4	6,630	65,365	20,431
4/4	8,172	71,084	22,388
1995. 1/4	8,770	59,999	22,083
2/4	9,709	62,695	22,900
3/4	10,798	68,618	26,337
4/4	10,278	104,594	31,622

자료 : 보험감독원.

<부표 16> 조세혜택 유형별 종합과세 제외 대상 금융상품

완전 비과세	▲개인연금(은행, 보험사) ▲장기주택마련저축(은행) ▲7년 이상 저축성보험(보험사)
10% 분리과세	▲은행 가계생활자금저축(1,200만원 한도)
25~30%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의 선택이 가능	5년 이상 장기채권성 상품 ▲장기채권형 개발신탁 수익증권(은행) ▲장기채권형 수익증권(투신사) ▲장기채권(증권사)
30%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의 선택이 가능	5년 이상 장기저축상품 ▲예·적·부금(은행) ▲부금(상호신용금고) ▲적금(신협, 새마을금고 등)

<부표 17> 금융소득 종합과세 발효 전후의 자금유출 금융상품 동향

(단위 : 증감액기준, 억원)

	1994	1995					1996
		1/4	2/4	3/4	4/4	연중	1/4
은행 정기예금[1]	71,375 (5,948)	136 (45)	15,330 (5,110)	1,273 (424)	17,832 (5,944)	22,443 (1,870)	1,083 (361)
은행 CD[2]	33,475 (2,790)	19,003 (6,334)	10,794 (3,598)	17,302 (5,767)	-15,898 (5,299)	23,470 (1,956)	13,634 (4,545)
투금사 CMA	5,509 (459)	813 (271)	9,437 (3,146)	14,010 (4,670)	-681 (227)	23,615 (1,968)	12,241 (4,080)
투금사 CP	53,191 (4,433)	63,154 (21,051)	5,211 (1,737)	39,307 (13,102)	22,985 (7,662)	138,625 (11,552)	56,962 (18987)
신용금고 정기예수금	43,315 (3,610)	3,799 (1,266)	12,163 (4,054)	3,633 (1,211)	10,398 (3,466)	18,919 (1,577)	8,552[3] (4,276)

주 : ( ) 안은 월평균 증감액.
1) 공모주청약정기예금 예대상계실적 제외.
2) 순발행액 기준.
3) 1996년 1~2월 증감액.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및 미출판자료.

<부표 18> 금융소득 종합과세 발효 전후의 자금유입 금융상품 동향

(단위 : 증감액기준, 억원)

	1994	1995					1996
		1/4	2/4	3/4	4/4	연중	1/4
특정금전신탁	99,057 (8,255)	8,064 (2,688)	32,808 (10,936)	31,471 (10,490)	15,459 (5,165)	88,035 (7,336)	6,637 (2,212)
일반불특정신탁	5,711 (476)	16,730 (5,557)	26,289 (8,763)	28,299 (9,433)	54,567 (18,189)	126,723 (10,560)	-6,302 (-2,101)
가계금전신탁	51,151 (4,263)	3,471 (1,157)	8,293 (2,764)	7,833 (2,628)	21,478 (7,159)	39,879 (3,323)	62,023 (5,169)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1]	21,294 (1,775)	3,894 (1,298)	-	1,500 (500)	32,111 (10,704)	70,292 (5,858)	14,312 (1,193)
보험예수금[2]	74,895 (6,241)	15,918 (5,036)	20,995 (6,998)	27,876 (9,959)	55,303 (18,434)	120,092 (10,008)	12,678[3] (6,339)

주 : ( ) 안은 월평균 증감액.
1) 종금사 취급액 제외. 순매각잔액 기준.
2) 보험기관(생명보험과 체신보험)의 보험준비금의 증감액.
3) 1996년 1~2월.

자료 :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 각 호 및 미출판자료.

<부표 19> 환율 추이

(단위 : 원/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6	12	6	8.12	8말	12말	6말	12말	6말	12말	6말	12말
환 율	790.2	788.4	803.7	809.1	808.4	808.1	805.5	788.7	758.1	774.7	810.6	844.2

자료 : 통계청, 『한국통계월보』, 각 호.

<부표 20> 자금의 대외지급 추이

(단위 : 백만달러)

	1992		1993		1994		1995		1996	
	1~6	7~12	1~6	7~12	1~6	7~12	1~6	7~12	1~6	7~11
무역외지급	8,803	7,822	9,408	10,812	11,424	13,116	16,123	17,288	18,472	15,949
해외여행경비	1,535	1,678	1,576	1,957	2,099	2,413	2,913	3,428	3,603	3,233

자료 : 한국은행, 『국제수지』, 각 호.